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유아용 조제보조식품 규정 개정 발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4개월-36개월 유아용 조제보조식품 규제 개정 발표

지난 4월 9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 개정 규정 2018(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Amendment Regulations, 2018)」의 유아용 조제보조식품 표준 개정을 발표함. 해당 규제는 24개월-36개월 유아용 조제보조식품 표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2011의 하부 규제인 2.4.11에 추가됨. 해당 규제 개정은 유아용 조제보조식품을 통해 영양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구체적인 함유 성분 기준치 명시

본 규정에 따르면, 사용이 허가된 기본 원료로 곡류(cereals), 콩류(legumes), 두류(pulses), 유지 종자분(oilseed flours), 유지 종자 단백질 제품(oilseed protein products), 동물 원료 제품(animal source foods), 유지(fats and oils), 과일, 채소, 우유, 유제품 및 그 밖의 소화성 탄수화물(digestible carbohydrates), 분리 단백질(protein isolates), 프로바이오틱스 성분(probiotic ingredient)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본 규정은 하기와 같은 필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에너지 밀도는 건조 기준으로 그램(g)당 최소 4kcal
-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Protein Digestibility Corrected Amino Acid Score, PDCAAS)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2세-5세 유아 대상 아미노산패턴(Amino Acid Pattern, 질적평가기준)의 70% 이상, 단백질은 PER 2.0(Protein Efficiency Ratio, 단백질 효율)에서 최소 15%, PER 1.75에서 최소 20%이어야 함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 수분의 최대 중량%(percent by weight)는 8.0임
- 지방의 최대 중량%(percent by weight)는 7.5임
- 총 회분(Total Ash)의 최대 중량%(percent by weight)는 7.5임
- 제품은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 2011 부록B의 “미생물 요구사항(Microbiological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함

이 외에, 비타민과 무기물은 선택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본 규정은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치와 패키징 및 라벨링 등을 명시하고 있음

미흡한 부분 많아, 심사숙고하여 수정된 규정 필요

기술규제위원회(Technical and Regulatory Committee) 및 건강보조제 협회(Health and Dietary Supplement Association, HADSA)의 Vaibhav Kulkarni 회장은 “현재 2~3세 유아용 표준식품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본 규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식품 표준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함.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양질의 유아용 식품 제공을 위해 현재 본 규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유아용 조제보조식품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인도 수출 대비해야…

현재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발표한 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 변경될 수 있음. 인도에 유아용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본 개정안을 숙지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함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규정 고시,

<http://www.fssai.gov.in/home/fss-legislation/notice-for-comments.html>

출처

FNB News, FSSAI notice seeks comments on amended children's supplement regulations, 18.04.09